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8허4355 거절결정(상)

원 고 크리에이티브 네일 디자인 인코포레이티드 (CREATIVE NAIL DESIGN INC)
미합중국 92121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타운센터 드라이브 9560
(9560 Towne Centre Drive, SanDiego, California 92121, U.S.A.)
대표자 쉐넨파미치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정명훈, 김예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변 론 종 결 2018. 8. 17.

판 결 선 고 2018. 9. 2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19. 2016원39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5. 11. 13./ 제40-2015-83818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네일에나멜(nail enamel), 핸드 클렌저(hand cleansers), 매니큐어 건조제(nail polish drying solutions), 인조손톱 조각에 사용하는 리퀴드/파우더(liquids and powders for sculpting artificial nails), 큐티클 로션(cuticle preparations, namely lotions), 손톱 강화제(nail strengtheners), 손톱광택제거제(nail polish removers), 큐티클 오일(cuticle preparations, namely oils), 매니큐어 밑칠제(base coats), 비의료용 풋 크림/로션(non-medicated foot creams, lotions), 큐티클 크림(cuticle preparations, namely creams), 인조 네일 팁 및 인조 네일 폼(artificial fingernail tips and forms), 인조 및 자연 손톱손질제(Artificial and natural nail care preparations), 핸드 크림/로션(hand creams, lotions), 리퀴드/파우더 폼 형태의 인조손톱부착용 접착제(adhesives for attaching artificial fingernails in liquid and powder

form), 마감칠용 매니큐어(top coats), 매니큐어(nail polish), 비의료용 풋 클렌저(non-medicated foot cleansers)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4. 2./ 2005. 9. 2./ 제120671호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1과 같다.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지에스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4. 2./ 2005. 9. 2./ 제120670호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별지 2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지에스

다.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3. 21. 원고에게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었다. 원고는 2016. 4. 28.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2. 원고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7. 4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6원3984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3. 19. 위 거절이유에 따른 이 사건 거절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의 “C&D”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로 그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GS” 부분은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으로서 식별력이 강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C&D” 부분을 제외하거나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 부분이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분리관찰 여부

(1) 갑 제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C&D” 부분이 ‘Connect&Development’의 약자로 쓰이는 경우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일종의 개방형 연구개발 방식(R&D)을 의미한다. ② LG생활건강, 콜마비엔에이치 등 기업들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외부 개인·기관의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7, 13~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GS” 부분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지에스를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 지에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로 GS칼텍스, GS건설 등 총 79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자산총액 58조 5,000억 원에 달한다. ③ 주식회사 지에스는 아래 표와 같이 상표등록을 하고 계열회사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서비스표권자
1	 GS EPS	45-0026172	주식회사 지에스
2	 GS E&R	41-0343367	주식회사 지에스
3	 GS E&C	41-0120674	주식회사 지에스
4	 GS E&C	41-0120675	주식회사 지에스
5	 GS건설	40-0628243	주식회사 지에스
		41-0120676	주식회사 지에스
6	 GS 리테일	45-0013443	주식회사 지에스
7	 GS Homeshopping	45-0013470	주식회사 지에스
8	 GS 홈쇼핑	45-0013469	주식회사 지에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C&D”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연구개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GS” 부분은 저명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출처표시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C&D” 부분인 ‘씨앤디’ 또는 ‘씨앤드디’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C&D” 부분이 “GS” 부분보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이 “C&D”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C&D”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구성 부분 전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여부

(1) 이 사건 출원상표 “**CND**”와 선등록서비스표 1 “**GS C&D**” 및 선등록서비스표 2 “**GS C&D**”는 구성단어 수, 도형 부분의 결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씨앤디”라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지에스 씨앤디” 또는 “지에스 씨앤드디”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이거나 원고의 기업명인 ‘CREATIVE NAIL DESIGN’의 줄임말이라는 관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 표들은 앞서 본 것처럼 ‘GS그룹의 개방형 연구개발업’ 내지 대기업인 “GS”의 계열회사 또는 개별 기업 업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관념은 유사하지 않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더 나아가 지정상품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선등록서비스 표들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식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별지 1]

선등록서비스표1의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약품판매알선업, 호텔경영업, 관광호텔운영업, 주유소경영업, 철구제품판매대행/알선업, 콘크리트제품판매대행/알선업, 건설자재판매대행/알선업, 레미콘판매대행/알선업, 비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판매대행/알선업, 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판매대행/알선업, 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대행/알선업, 가구류판매대행/알선업, 압력용기판매대행/알선업, 열교환기판매대행/알선업, 공기조화기판매대행/알선업, 사진복사업, 마케팅연구업, 구매대행서비스업, 프랜차이즈관련마케팅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회원제신용카드발행업, 전자화폐발행업, 전자식자금대체업, 전자상품권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임대료징수업, 상품권발행업, 보험대리업, 보험상당업, 화재보험업, 보험정보제공업, 보험중개업, 재무관리업, 재무평가업, 무역중개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인터넷을통한무역거래중개업, 중고자동차중개업, 건물분양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업, 부동산관리업, 할인점관리업, 백화점관리업, 주택관리업, 건물관리업, 부동산개발신탁업, 산지개발/도시개발/택지개발관련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농장임대업, 골동품감정업, 기부금모금업, 통관중개업, 철구제품중개업, 콘크리트제품중개업, 건설자재중개업, 레미콘중개업, 비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중개업, 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중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중개업, 가구류중개업, 압력용기중개업, 열교환기중개업, 공기조화기중개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주택건축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건축물해체공사업, 건축장치물설치공사업, 건축정보제공업, 건축청부업, 경기장건설공사업, 고가

로건설공사업, 공장건설업, 아파트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빌딩건설공사감독업, 소방공사업, 도로건설공사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댐및저수시설건설업, 원자로건설업, 전력생산을위한발전소건설업, 송전탑건설업, 냉난방설비공사업, 지역난방설비공사업, 배관공사업, 파이프라인설치공사업, 관광지조성업, 공원조성공사업, 공유수면매립업, 복지시설건설업, 폐기물처리시설시공및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시공및건설업, 하수종말처리시설시공및건설업, 건축장비임대업, 건설관련중기임대업, 철도건설업, 고속전철및전철건설공사업, 상수도시설건설공사업, 분뇨처리시설시공및건설업, 축산폐수시설시공및건설업, 건축물정밀안전진단업, 기계류수선업, 난방장치수선업, 냉동장치수선업, 리프트수리업, 전기설비수리업, 시설물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업, 문화재보수공사업, 자동차수리업, 건설용중기수리업, 플랜트설비유지보수업, 경석연마처리업, 옷감축융업, 채광업, 채석업, 굴뚝청소업, 도로청소업, 자동차세차업, 자동차크리닝서비스업, 수송기계기구청소업, 세탁업, 건축감리업, 건축설계감리업, 파이프라인관리업, 판이음업, 화재경보기설치업, 용광로설치업, 인공강설서비스업, 주방기구설치업, 난방기구설치업, 냉동장치설치업, 누수탐지업, 승강기설치업, 실내장식업, 공기조절장치설치업, 기계류설치관리업, 가스공급장치설치및유지/관리업, 발전소운영업, 상하수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업, 화물터미널관리운영업, 유료도로관리운영업, 건설사업관리업, 원자력발전소운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폐기물모집운반업, 폐기물운송업, 주차장임대업, 주차장운영업, 철도운송업, 택배서비스업, 선박임대업, 견인업, 가구운송업, 보트운송업, 케이블카운송업, 화물발송중개업, 화물선적업, 하역업, 냉장창고업, 농산물창고업, 물품보관업, 창고임대업, 폐기물보관업, 휠체어임대업, 보트장경영업, 관광객안내업, 관광안내업, 여행알선업, 호텔예약업을제외한관광여행사업, 여행예약업, 에너지배급업, 전기배급업, 지

역난방배급업, 전기공급업, 지역난방공급업, 지역냉방공급업, 지역냉방배급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0류의 석유정제업, 오일처리업, 재료처리정보제공업, 정제업, 폐유
재생업, 플라스틱가공업, 고무가공업, 의류수축방지처리업, 직물염색업, 철광업, 폐기물
재생업, 목재벌목업, 제본업, 읍셋인쇄업, 치기공업, 환경오염방지처리업, 위험물정화업,
분뇨수거처리업, 공기정화업, 공기탈취업, 쓰레기처리업, 봉제업, 양복점업, 사진인화업,
사진처리업, 영화필름현상업, 발전기임대업, 편물기계임대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온라인을 통한 영화상영업, 온라인을
통한 영화배급업, 영화제작업, 연예단체조직및연예인공연서비스업, 음악공연업, 텔레비전
오락업, 라디오및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영화관련정보제공업, 연예정보제공업, 동물사
육지도업, 교과서출판업,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전
용), 나이트클럽업, 학교기숙사업, 미용기술지도업, 교육기관의설립/운영업, 교육지도업,
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 전람회개최관리업, 통신강좌업, 개인교수업, 영어학
원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건설장비운용학원경영업, 요리학원경영업, 골프시설제공
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스키장운영업, 유기장운영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공원및유원
지운영업, 관광지운영업, 스포츠설비관리업, 실내경기장경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게임
센터제공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온라인게임단운영업, 온라인게임경기조직업, 기원경영
업, 노래방서비스업, 경마장경영업, 패션쇼개최업, 마이크로필름기록업, 비디오녹화촬영
업, 행사개최대행업, 세미나준비및진행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법무사업, 지적소유권라이센싱업, 지적소유권과 산업기술상
정보의매매및주선서비스업, 약제연구업, 화장(化粧)연구업, 환경연구업, 건축설계업, 건
축상담업, 자원재활용플랜트설계업, 오수정화시설설계업, 송유관및가스수송관설계업, 상

수도시설설계업, 광고디자인업,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기계연구업, 토지조사업, 품질관리업, 화학서비스업, 환경보호에관한상담업, 일반측량업, 에너지관리진단업, 건설 부문수탁연구용역업,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업, 지하시설측량업, 토지측량업, 연구개발 대행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경관영향평가대행업, 재해영향평가대행업, 유전탐사조사분석업, 지질연구조사업, 지질탐사업, 지하자원(원유/광물등)개발업, 산업설비용역및환경영향평가대행업, 공인시험검사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휴게실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레스토랑업, 커피전문점운영업, 카페업, 한식점경영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관광숙박업, 숙박시설안내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양로원업, 성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휴일캠핑숙박서비스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방임대업, 동물수탁관리업, 탁아소업, 회의실임대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가금부화업, 가축매매중개업, 동물사육업, 목축업, 병아리감별업, 원예서비스업, 건강관리업, 병원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약국업, 요양소업, 한의원업, 치과업, 마사지업, 목욕탕업, 미용실업, 미용상담업, 화장상담업, 휴양소경영업, 애완 동물손질업, 물물교환소개업, 안경사업, 조경업

[별지 2]

선등록서비스표2의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약품판매알선업, 호텔경영업, 관광호텔운영업, 주유소경영업, 철구제품판매대행/알선업, 콘크리트제품판매대행/알선업, 건설자재판매대행/알선업, 레미콘판매대행/알선업, 비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판매대행/알선업, 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판매대행/알선업, 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대행/알선업, 가구류판매대행/알선업, 압력용기판매대행/알선업, 열교환기판매대행/알선업, 공기조화기판매대행/알선업, 사진복사업, 마케팅연구업, 구매대행서비스업, 프랜차이즈관련마케팅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회원제신용카드발행업, 전자화폐발행업, 전자식자금대체업, 전자상품권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임대료징수업, 상품권발행업, 보험대리업, 보험상당업, 화재보험업, 보험정보제공업, 보험중개업, 재무관리업, 재무평가업, 무역중개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중개업, 중고자동차중개업, 건물분양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업, 부동산관리업, 할인점관리업, 백화점관리업, 주택관리업, 건물관리업, 부동산개발신탁업, 산지개발/도시개발/택지개발관련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농장임대업, 골동품감정업, 기부금모금업, 통관중개업, 철구제품중개업, 콘크리트제품중개업, 건설자재중개업, 레미콘중개업, 비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중개업, 수송기계기구용연소기계중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중개업, 가구류중개업, 압력용기중개업, 열교환기중개업, 공기조화기중개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주택건축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건축물해체공사업, 건축장치물설치공사업, 건축정보제공업, 건축청부업, 경기장건설공사업, 고가

로건설공사업, 공장건설업, 아파트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빌딩건설공사감독업, 소방공사업, 도로건설공사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댐및저수시설건설업, 원자로건설업, 전력생산을위한발전소건설업, 송전탑건설업, 냉난방설비공사업, 지역난방설비공사업, 배관공사업, 파이프라인설치공사업, 관광지조성업, 공원조성공사업, 공유수면매립업, 복지시설건설업, 폐기물처리시설시공및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시공및건설업, 하수종말처리시설시공및건설업, 건축장비임대업, 건설관련중기임대업, 철도건설업, 고속전철및전철건설공사업, 상수도시설건설공사업, 분뇨처리시설시공및건설업, 축산폐수시설시공및건설업, 건축물정밀안전진단업, 기계류수선업, 난방장치수선업, 냉동장치수선업, 리프트수리업, 전기설비수리업, 시설물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업, 문화재보수공사업, 자동차수리업, 건설용중기수리업, 플랜트설비유지보수업, 경석연마처리업, 옷감축융업, 채광업, 채석업, 굴뚝청소업, 도로청소업, 자동차세차업, 자동차크리닝서비스업, 수송기계기구청소업, 세탁업, 건축감리업, 건축설계감리업, 파이프라인관리업, 판이음업, 화재경보기설치업, 용광로설치업, 인공강설서비스업, 주방기구설치업, 난방기구설치업, 냉동장치설치업, 누수탐지업, 승강기설치업, 실내장식업, 공기조절장치설치업, 기계류설치관리업, 가스공급장치설치및유지/관리업, 발전소운영업, 상하수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업, 화물터미널관리운영업, 유료도로관리운영업, 건설사업관리업, 원자력발전소운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폐기물모집운반업, 폐기물운송업, 주차장임대업, 주차장운영업, 철도운송업, 택배서비스업, 선박임대업, 견인업, 가구운송업, 보트운송업, 케이블카운송업, 화물발송중개업, 화물선적업, 하역업, 냉장창고업, 농산물창고업, 물품보관업, 창고임대업, 폐기물보관업, 휠체어임대업, 보트장경영업, 관광객안내업, 관광안내업, 여행알선업, 호텔예약업을제외한관광여행사업, 여행예약업, 에너지배급업, 전기배급업, 지

역난방배급업, 전기공급업, 지역난방공급업, 지역냉방공급업, 지역냉방배급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0류의 석유정제업, 오일처리업, 재료처리정보제공업, 정제업, 폐유
재생업, 플라스틱가공업, 고무가공업, 의류수축방지처리업, 직물염색업, 철광업, 폐기물
재생업, 목재벌목업, 제분업, 읍셋인쇄업, 치기공업, 환경오염방지처리업, 위험물정화업,
분뇨수거처리업, 공기정화업, 공기탈취업, 쓰레기처리업, 봉제업, 양복점업, 사진인화업,
사진처리업, 영화필름현상업, 발전기임대업, 편물기계임대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온라인을 통한 영화상영업, 온라인을
통한 영화배급업, 영화제작업, 연예단체조직및연예인공연서비스업, 음악공연업, 텔레비전
오락업, 라디오및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영화관련정보제공업, 연예정보제공업, 동물사
육지도업, 교과서출판업,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전
용), 나이트클럽업, 학교기숙사업, 미용기술지도업, 교육기관의설립/운영업, 교육지도업,
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 전람회개최관리업, 통신강좌업, 개인교수업, 영어학
원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건설장비운용학원경영업, 요리학원경영업, 골프시설제공
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스키장운영업, 유기장운영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공원및유원
지운영업, 관광지운영업, 스포츠설비관리업, 실내경기장경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게임
센터제공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온라인게임단운영업, 온라인게임경기조직업, 기원경영
업, 노래방서비스업, 경마장경영업, 패션쇼개최업, 마이크로필름기록업, 비디오녹화촬영
업, 행사개최대행업, 세미나준비및진행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법무사업, 지적소유권라이센싱업, 지적소유권과 산업기술상
정보의매매및주선서비스업, 약제연구업, 화장(化粧)연구업, 환경연구업, 건축설계업, 건
축상담업, 자원재활용플랜트설계업, 오수정화시설설계업, 송유관및가스수송관설계업, 상

수도시설설계업, 광고디자인업,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기계연구업, 토지조사업, 품질관리업, 화학서비스업, 환경보호에관한상담업, 일반측량업, 에너지관리진단업, 건설 부문수탁연구용역업,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업, 지하시설측량업, 토지측량업, 연구개발 대행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경관영향평가대행업, 재해영향평가대행업, 유전탐사조사분석업, 지질연구조사업, 지질탐사업, 지하자원(원유/광물등)개발업, 산업설비용역및환경영향평가대행업, 공인시험검사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휴게실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레스토랑업, 커피전문점운영업, 카페업, 한식점경영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관광숙박업, 숙박시설안내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양로원업, 성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휴일캠핑숙박서비스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방임대업, 동물수탁관리업, 탁아소업, 회의실임대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가금부화업, 가축매매중개업, 동물사육업, 목축업, 병아리감별업, 원예서비스업, 건강관리업, 병원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약국업, 요양소업, 한의원업, 치과업, 마사지업, 목욕탕업, 미용실업, 미용상담업, 화장상담업, 휴양소경영업, 애완 동물손질업, 물물교환소개업, 안경사업, 조경업